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

의 안 변 호	2840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26일
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- 나. 이에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추가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 업 명 : 서울문화재단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3) 사무내용

-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

-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
- 국내·외 문화예술 교류
-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
- 지역문화의 ·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
-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나. 추경개요

1) 추경예산 : 290,000천원

※ 총 출연금액 53,979,275천원 (기 출연금 53,689,275천원)으로
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
2) 출연금 편성 내용

- 순수공연예술 통합브랜드 : 290,000천원

3) 추경필요성

- 신규 개발중인 가을 축제브랜드의 시민인지도 제고 위한 개막행사 개최비용으로,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추가적인 출연금 증액이 필요

다.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

1) 소 재 지 :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(용두동 255-67)

2) 규 모 : 대지 1,520.2 m^2 , 건물 2,367.41 m^2 (6층 건물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정유진 (☎ 2133-2555)